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정신건강) 신규 채용 시험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정신건강분야)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5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인원	채용기간	직무내용	근무예정부서
정신건강 분야	시간선택제 임기제 "마" 급 (주 35시간)	1명	채용일로부터 1년	- 정신질환자 응급·위기 관리 - 정신질환자 상담, 집중 사례관리 -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- 정신재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- 기타 보건소 관련 업무 등	의약과 (정신건강 복지센터)

※ 근무성적 등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따르면,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.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.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.)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따르면,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」 제10조(응시연령)에 따르면,

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.

▶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채용직급	응시자격요건
시간선택제임기제 "마"급	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*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 취득 전 수련과정을 경력으로 인정

◆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* **정신건강복지센터 경력자 우대**
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자살예방센터, 정신의료기관 등(보건소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등 포함)에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
- ◆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○ 근무조건

- 근무시간 : 주 5일 35시간 (1일 7시간 근무)
-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
○ 보수 및 수당

- 기본연봉

임용 직급	연 봉 액	비 고
시간선택제임기제 "마"급	22,000천 원	

-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시간외 수당, 여비 등은 별도 지급
-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7. 29. (월) ~ 7. 31. (수) <3일간>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(대리접수 가능, 팩스 · 인터넷 접수 불가)

- ※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 수수료 동봉 제출
- ※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(우편접수 시 반드시 ☎02-330-8983으로 우편원서 접수 통보)
- 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 - 접수처 : 서대문구보건소 7층 의약과 정신건강팀
 - 주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, 7층 의약과 정신건강팀 (우)03718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1차 서류전형	2024. 8. 1. (목)	-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4. 8. 2. (금)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
2차 면접시험	2024. 8. 13. (화)	면접장소 추후통보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4. 8. 16. (금)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

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는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는 서류합격자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. 이 경우에도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.
- 합격자 발표 :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

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(3점)·중(2점)·하(1점)로 평가

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동점자일 경우 면접심사 평가요소 중 “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” 및 “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” 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 선발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
- 응시수수료 : 5,000원(마급) 상당의 서대문구 수입증지 인증
- ※ 수입증지 판매처 :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인증
- ※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5호 서식) 1부

○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(별지 제6호 서식) 1부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제7호 서식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기재된 것) 1부

○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사본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사본 제출 가능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확인용) 제출 필요)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
- 해당기관(회사)의 관인(법인 인장)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근무 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 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(별지 제8호 서식) 추가 제출

○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(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)
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
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 제출 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**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**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(☎ 02-330-89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